

관악청소년자립지원관(이용형, 들꽃) 운영위원회 회의록

관악청소년자립지원관(이용형, 들꽃) 운영위원회 제1차 정기회의			
일 시	2024.2.20.(화) 16:00~17:30	장 소	관악청소년자립지원관(이용형, 들꽃) 상담실
참석자	양민옥 위원장, 박윤희 위원, 이영숙 위원, 황혜신 위원		
회의 내용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운영위원회 진행 - 양민옥 위원장 1. 성원 보고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양민옥 위원장이 성원 완료를 보고(운영위원 6명 중 4명 참석으로 성원 완료) - 조순실, 홍선 운영위원 개인 사정으로 불참 2. 개회 선언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양민옥 위원장이 2024년 제1차 운영위원회 개회 선언 3. 보고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2023년 사업 운영 보고 2) 2023년 정산 보고 4. 심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2024년 주요 과업 2) 2024년 사업계획 3) 2024년 사업 예산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년 사업계획, 예산에 대해 박윤희 위원이 동의하고 이영숙 위원이 제청하여 심의사항을 승인함. 5. 논의 및 기타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1) 2024년 시설 운영 관련 2) 2024년 청소년사업안내 변경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월 초 여성가족부에서 청소년사업안내 변경 사항에 관한 설명회가 있었음. 자립 지원수당 대상 확대에 따라 자립지원관 이용 기간도 산입되므로, 본 시설 이용 청소년의 컴퓨터 이용 기간 등 확인이 필요함. 3) 사례지원 및 사업 운영 관련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(1) 자립준비청소년과 자립준비청년에 관한 지원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립준비수당 수급하고 있음이 확인될 시, 아동자립지원단을 통해 사례관리, 사후 관리 대상 여부를 확인하되, 사례관리 대상인 경우는 즉시 지원을 중단하고, 사후 관리 대상인 경우는 지원함. 자립지원 대상으로 선정 시 사례관리(1년)와 사후관리(6개월)는 기본 기간으로 하되, 예외적 상황 발생 시 사례심의를 거쳐 연장하도록 하며, 자립지원 내용은 최소화하여 현금성 지원은 하지 않고, 정보제공과 자원연계, 후원물품 지원 등으로 함. - 이 부분에 관해서는 지속적인 이슈 제기가 필요함. 또한, 자립지원단에 꾸준히 사례관리를 요구해야 함. (2) 자립활동실비 지원 관련 4) 자립지원수당 확대에 따른 고민 		

관악청소년자립지원관(이용형, 들꽃) 운영위원회 회의록

결정사항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보고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3년 사업 운영 보고 - 2023년 정산 보고 • 심의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2024년 사업 계획(안): 승인함 - 2024년 사업 예산(안): 승인함 • 논의 및 사항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- 자립준비청년 자립지원 기준 변경; 쉼터나 유관기관 추천된 후 수급자로 사후관리 대상임이 확인된 청소년에 한해 지원하되, 현금성 지원은 불가하고, 정보제공, 자원 연계 등으로 지원함. 지원기간은 사례관리(1년)와 사후관리(6개월)로 함. - 자립활동실비 적용 기준: 사례관리 기간은 청소년별 연간 교육과 심리정서지원 한도 (교육비 100만원, 심리정서지원 100만원)를 정하여 지원하되, 사례관리 1년간 교육비 지원 요청이 없었을 시 자기계발교육으로 확대 지원함. - 자립지원수당 확대에 따른 준비: 자립지원수당에 업무를 수행하며 발생하는 행정상의 어려움 등에 관해 여가부에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필요함.
정책 건의	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• 시설을 퇴소한 청소년은 누구나 공평한 자립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이슈화하는 것이 필요함. 또한, 자립수당을 받는 자립준비청년(보호종료아동)에 대한 사례관리가 청소년복지시설로 연계되는바, 이들에 대한 사례관리와 사후관리를 담당하는 아동자립지원단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아동자립지원단과 복지부에 의견을 제안하는 것이 필요함.